

청주교육대학교 관사관리 규정

제정 2002. 10. 10. 규칙 제1093호

개정 2021. 6. 23. 규칙 제158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6. 23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93-9번지에 위치한 주택과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21. 6. 23.>

제3조(입주자격) 관사의 입주자격은 본교 총장 및 교직원(원어민 강사 포함)으로 한다. <개정 2021. 6. 23.>

제4조(입주자 결정)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사유를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

1. 총장
2. 기관 간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하는 교직원
3. 청주시내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교직원
4. 특별한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<개정 2021. 6. 23.>

제5조(사용기간) ① 관사의 사용기간은 6개월로 하며, 신청자가 없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총장 및 총무처장은 재임기간, 원어민강사는 재직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6. 23.>

②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책임) ① 사용자는 관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② 관사용 비품은 정부의 물품관리 관계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사용기간의 만료시에는 반드시 비품목록에 의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리비 부담) ① 관사 관리비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청주교육대학교 운영비에 서 부담한다.

1. 신개축 및 증축비 등 기본시설비(부대시설 및 각종 설비포함)
2. 수선비 및 화재보험료 등 유지관리비
3. 주거에 필요한 기본비품 구입 및 수리비

② 제1항 이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585호, 2021. 6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관사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.